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안내

□ **모자협약 체결 수련병원 및 통합수련병원 파견수련 원칙** (방침 '8.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 모자협약체결 수련병원

- 모병원 : 400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자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으로, 수련전문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이어야 한다.

- 자병원 :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으로 **인턴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 과목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모병원은 전공의 파견일정을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공의 파견일정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병원(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위배될 경우 파견일정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근무조건
  ·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는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모병원은 해당 전공의를 모집 및 관리하며, 자병원은 파견수련중인 전공의를 지도 감독한다.

○ 통합수련병원

-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각 병원이 수련병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문과목에만 순환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같은 병원군 내에서 참여병원들을 선도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대표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순환근무 : 모자협약 병원 규정에 따르되, **주교육병원을 모병원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병원에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모자협약 체결 수련병원 및 통합수련병원의 경우 **각 병원의 과목별·연차별 정원 내**에서 전공의 파견 수련 가능

※ 정원을 책정받지 못한 과목이 **당해 연도 파견가능 또는 탄력가능**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당 연도는 모자협약 미체결 파견수련 절차**를 통해 파견 수련이 가능

<참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전공의의 정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 파견수련 원칙 (방침 '8.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

- 전공의 파견은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파견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전공의 파견수련 승인(또는 전공의 정원)을 신청한 전문과목**에 대해 **수련환경평가 결과와 학회의견을 토대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병원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 전공의 파견 기간은 **연차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전공의 파견은 **해당학회 동의**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해당 병원은 전공의 파견 시작일 15일 이전에 전공의 파견수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기타 특수 병원 및 기관

- 전공의 임상수련 또는 다양한 증례의 경험을 목적으로 **수련병원 이외의 특수병원 및 기관**(인턴 수련병원의 경우 특정과목에 대해 특수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해외 병원 및 기관**에 전공의 파견수련을 원할 경우 **총 수련기간 중 4개월 이내**(단, 가정의학과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별 4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차별 교과과정 범위내에서 해당 학회의 추천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전공의 파견수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특수 수련병원 및 기관 : 붙임 참조

○ 벌칙

- **비수련병원에 임의로 전공의를 파견한 병원 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을 위반한 병원은 해당 과의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

※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 파견은 **전공의 정원을 책정받은 수련병원(기관)** 및 **기타 특수 병원(기관)으로 인정받은 병원(기관)**에 대해 가능하며, **정원을 책정받지 못한 과목의 경우 당해 연도 파견가능 또는 탄력가능 통보를 받은 과목**에 대해 파견 수련이 가능

<불임> 기타 특수 파견 가능 병원 및 기관 현황

과 목	기타 특수 병원 및 기관
병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역법의관사무소
직업환경의학과	노동부, 환경부, 근로복지공단(폐질환연구소 포함) 및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사업장
피부과	한센복지협회
예방의학과	질병관리본부
정신건강의학과	지역정신보건센터
내과	빛고을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외과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산부인과	시엘병원
가정의학과	지역사회의료기관(수련병원을 제외한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보건의료기관)
방사선종양학과	가톨릭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